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2.9 (수)		
배포일시	2011. 2. 8 (화) 10:00	담당부서	국고국 회계결산과
담당과장	권 준 호 (2150-5230)	담당자	윤지희 사무관(2150-5235)

제목 : 정부, 국가채권 연체관리 강화로 재정확충 도모키로 - 「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」 마련 · 추진

□ 정부는 국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세입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가채권*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· 적극 추진할 계획

* 조세채권 및 벌금류 채권(벌금, 과료, 추징금, 과태료 등)을 제외한 국가채권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으로 부담금, 변상금, 고용 · 산재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

○ 이번 개선방안은 채권관리기관의 연체채권 회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, 효율적 회수를 위한 연체자 관리 강화 및 연체자의 자발적 납부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

*** (참고) 국가채권 규모**

- '09년 말 현재 국가채권은 164.4조원이고, 이 중 연체채권은 4.5조원
- 연체채권은 법정부담금(환경개선부담금, 개발부담금 등),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3.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(74.1%)을 차지

□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등 우선추진과제는 금년 중 국가채권관리법 개정과 세부위탁지침 마련 후 즉시 시행

① 채권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

②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*를 단계적으로 외부에 위탁하여 연체채권 회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

* 국민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행위(독촉장 송부, 실주소지 조사 등)에 국한

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은행연합회)에 연체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고, 연체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연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

□ 그 외 중장기 과제로 연체정보 정부 통합관리, 연체채권-채무 상계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·검토하여 연체채권을 획기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

※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

기획재정부 대변인

< 붙임 >

<보도일시: 2011.2.9(수) 조간>

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

2011. 2

계 획 재 정 부
회 계 결 산 과

순서

I. 국가채권 관리현황	1
1. 국가채권의 개념 및 관리체계	1
2. 국가채권 현황	2
3. 국가채권 관리의 문제점	3
II.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	5
1. 채권관리사무 성과평가	5
2. 회수업무 민간위탁	6
3.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 자료 제공	8
4.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	9
5. 기타 증장기 검토과제	10
III. 향후 추진계획	11

I. 국가채권 관리 현황

1 국가채권 개념 및 관리체계

□ (국가채권)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

- 근거 법령 및 관리체계 등에 따라 조세채권, 벌금류 채권, 국가채권관리법 상 국가채권으로 분류

<조세채권>	<벌금류 채권>	<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>
국세징수법, 관세법	형사소송법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	국가채권관리법

- 조세채권*과 벌금류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 미적용

* 단, 채권결산서(채권현재액총계산서)에는 조세채권 금액 포함

- 조세채권은 징수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, 벌금류 채권은 형벌적 성격임을 감안, 국가채권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

- (조세채권) 관리법규(국세징수법·관세법)와 관리체계(국·관세청)가 잘 정비되어 있어 국가채권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
- (벌금류 채권) 형법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며, 형벌적 성격으로 노역장 유치, 사회봉사 대체 등이 가능하여 단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채권과 구분

-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(이하 “국가채권”)은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, 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, 용자회수금 등으로 구성

채 권 종 류	내 용
사회보장기여금	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
경 상 이 전 수 입	법정부담금(환경개선부담금, 개발부담금, 과일부담금 등), 변상금, 가산금(국세가산금 등) 등
용 자 회 수 금	재정자금 용자원금(국민주택기금 등), 전대차관원금
예 금 및 예 탁 금	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시중은행 예치금
기 타	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(면허료 및 수수료, 병원수입 등), 재산수입(토지 및 건물 대여료 등), 관유물매각대 (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) 등

□ (채권관리) 각 중앙관서 및 4,500여개 일선관서 채권관리관이 개별법과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채권관리·회수 업무 수행

○ 연체시, 개별법에서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경우* 납부독촉, 재산압류·매각 등 절차에 따라 회수

* 주로 법률에 의해 부과하는 부담금, 면허료, 보험료 등의 공과금 채권

○ 개별법 및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*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담보물처분 또는 소송을 통한 강제이행을 통해 회수

* 주로 계약에 의해 채권이 발생하는 매각대, 대여료, 판매료 등

2 국가채권 현황

□ 국가채권은 '09년말 현재 약 164.4조원(조세 포함시 174.7조원*)

* 연도말 현재액이므로 연도 중 징수결정·납부된 금액은 미반영

○ 용자회수금(77.5%)과 예금·예탁금(18.4%)이 대부분

□ 연체채권은 국가채권의 약 2.7%인 4.5조원(조세 포함시 8.6조원)

○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*이 74.1% 차지

* 법정부담금 1.2조원, 가산금 0.5조, 변상금 등 0.1조, 변제금 등 기타 1.4조

< 국가채권·연체채권 현황('09) >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국가채권		연체채권		국가채권 대비 연체채권 비중
	액	(구성비)	액	(구성비)	
용자회수금	1,274,268	77.5	5,623	12.6	0.4
예금·예탁금	302,333	18.4	33	0.0	0.0
경상이전수입	44,993	2.7	33,184	74.1	73.8
사회보장기여금	4,475	0.3	4,469	10.0	99.8
기타채권	18,136	1.1	1,460	3.3	8.0
계	1,644,205	100	44,769	100	2.7

3 국가채권 관리의 문제점

- 중앙관서 및 일선관서의 연체채권 해소노력 미흡
 -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중단* 등으로 채권관리에 대한 조직차원의 관심이 낮은 실정
 - *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통해 도입·시행('04~'06)되었으나 평가지표의 객관성 문제 등으로 '07년부터 성과평가 중단

- 각 관서 단위로 연체채권을 분산 관리함에 따라 채무자 정보를 중복 수집하는 등 비효율 발생
 - d-Brain 시스템상 개별채권의 발생~회수까지의 이력관리 부재

- 채권관리 인력부족 및 이에 따른 채무자 정보수집 부족
 - 한정된 인력에 비해 처리건수가 많아 고액채권 징수에 집중할 경우 다수의 소액 연체채권(10만원미만) 관리 소홀
 - 소액 연체채권의 경우 정보수집비용 등 추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어 적극적 징수를 포기하고 장기간 방치
 - 채무자의 재산정보 부족으로 재산압류 등의 조치에 어려움

-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연체채권 강제 회수 등 적극적 채권관리에 어려움
 - 조세채권은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수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, 비조세채권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부족

< 채권 종류별 제재수단 현황 >

	조세채권	벌금	과태료	국가채권
	(국세징수법, 관세법)	(형사소송법 및 검찰집행 사무규칙)	(질서위반 행위규제법)	(국가채권 관리법)
체납·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	○	×	○	△*
금융자산 조회	○	×	×	×
고액체납자 명단공개	○	×	×	△*
출국규제	○	○	×	×
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지급	○	×	×	×
관허사업제한	○	×	○	×
노역장 유치	×	○	×	×

* 고용보험·산재보험의 보험료 미납시 개별법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)에서 신용정보제공, 명단공개 등을 규정

II.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

1 채권관리사무 성과평가

□ (도입방안) 채권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

○ 채권종류별 특성을 성과지표에 반영 하는 등 평가지표의 합리성을 제고*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

* 「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」 (한국행정연구원, '10.6월~8월) 연구용역 수행

○ 업무순환(계획-집행-실적-활용)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특히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비 성과를 평가

< 성과평가 지표 (예시) >

항목	지표(배점)	주요내용
계획	계획수립의 적정성(5)	- 채권관리계획 수립시 실태분석 등을 했는지 여부
	성과목표의 적정성(5)	- 계획 수립시 회수율 등 실태분석에 근거하여 구체적 성과 목표치 제시 여부
집행	추진체계의 적절성(10)	- 총괄채권관리관의 임명여부 - 채권관리 업무분담의 적정성
	채권관리업무의 적절성(20)	- 채권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여부 - 미회수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실적의 우수성
실적	업무성과의 우수성(50)	- 회수율 목표달성도 - 악성연체채권 관리실적 및 소멸행위 실적
활용	성과활용의 적절성(10)	- 채권관리 실적을 부처내 평가에 활용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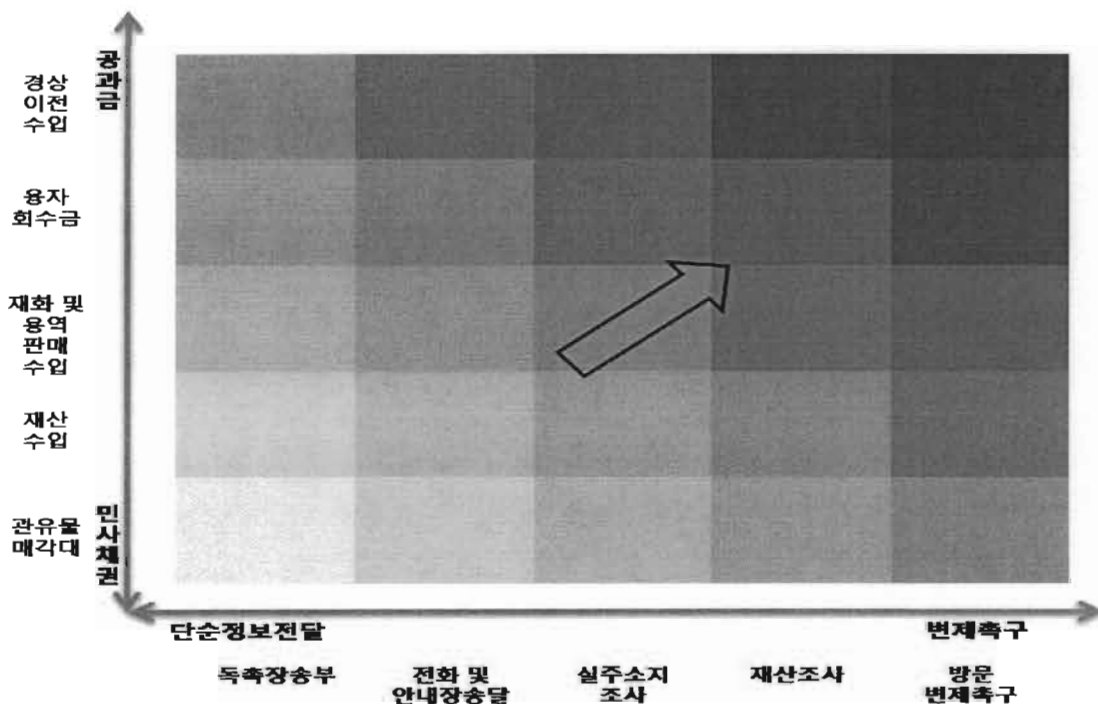
□ (요조치 사항) 평가계획 부처시달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

○ '11회계연도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계획 부처시달 (~'11.2월)

2 회수업무 민간위탁

- 연체 및 결손처분 채권*의 관리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
 - 채무자 정보수집 및 연체사실 전달 등의 업무* 위탁을 통해 행정비용 감축 및 공무원 업무부담 경감
 - *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행위에 국한
- (위탁기관) 초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, 추후 제도정착 및 신용정보시장 확대시 민간 업체 선정·위탁
- (위탁범위) 채권의 종류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위탁범위 확대

< 민간위탁 위탁 범위 >



○ **(채권 종류) 민사채권과 성격이 유사한 채권*부터 위탁 실시**

* 계약, 재화 및 용역 판매 등에 의한 것으로 연체시 강제이행을 통해 회수하는 채권

- 민사채권과 유사한 채권은 회수에 대한 **저항이 비교적 적고 채무자 범위가 비교적 좁아** 우선 실시에 적합

- **단계적으로 공과금***(부담금 등) 채권으로 확대

*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**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** 중 국세, 관세, 임시수입부가세,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 (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8호)

○ **(업무 성격) 단순 정보전달(독촉장 송부) 업무부터 위탁 실시**

- 단계적으로 채무자 재산 및 실거주지 조사, 변제촉구 등으로 확대

□ **(수수료) 채권의 종류·연체기간 및 회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**

○ **美 재무부는 24개월 미만 연체 채권은 총 회수액의 23%, 24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총 회수액의 25% 지급**

□ **(요조치 사항)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채권관리법 개정**

○ **법 개정 전이라도 자산관리공사가 위탁수수료 없이 '11년도 하반기 중 시범실시 예정**

3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 자료 제공

- (도입방안) 신용정보집중기관(은행연합회)에 연체 및 결손처분 등 자료*를 제공하여 자발적 변제를 유도

*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연체금액(결손처분금액)

-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각 신용평가업체에 연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, 신용평가업체는 신용등급 판단 등에 활용
 - 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연체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, 제공시 채무자에게 제공사실 통보
 - 정보제공 사유 해제시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정보를 삭제토록 하여 개인의 신용관리 도모

* (참고) 조세채권의 체납정보 제공 현황

- 현행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에 따라 조세채권의 체납 및 결손처분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(은행연합회)에 제공
- 정보제공요건
 -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
 -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
 -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

- (요조치 사항) 국가채권관리법 개정

- 연체정보 제공요건 및 제공자료의 내용, 채무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

4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

- (도입방안) 연체 채무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중앙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은닉재산 정보 확보
 - 채무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을 방지하고, 신고된 재산을 통해 연체채권 회수
 - 포상금 지급은 연체자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여 각 부처의 포상금예산 확보 편의 도모

*** (참고) 조세채권 관련 신고포상 현황**

-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-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

징수액	2천만원이상 2억원이하	2억원초과 5억원이하	5억원 초과
지급률	100분의 5	1천만원 +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	1천9백만원 +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

□ (요조치 사항) 국가채권관리법 개정

- 포상 금액, 적용 제외대상, 포상금 지급시기 등의 내용을 규정

5 증장기 검토과제

- (정부통합 연체정보 시스템)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를 집중 관리토록 d-Brain 시스템 개선 (국가채권관리법 개정사항)
 - 각 부처가 보유한 연체채무자 관련정보를 집중관리 하여 동일 채무자에 대한 중복적 정보수집 방지
 - (연체채권-채무상계) 국가의 채무와 연체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 이를 상계(offset)*하여 연체채권 해소 추진
 - * 유사제도: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·가산금·체납처분비 등을 총당 후 지급토록 규정(국세기본법51조), 美 재무부 Treasury Offset Program
 - 채무 보유부처가 연체채권 보유부처에 직접 채무금액을 지급하여 정부의 채권 회수비용 절감
- ⇒ 증장기 과제는 채무자의 재산권,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, 추후 재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연구용역 수행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단계적 추진

Ⅲ. 향후 추진계획

분류	과제명	향후 계획
우선 추진 과제	채권관리사무 성과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과평가계획 확정·시달 (2월말) • 평가자료 확보를 위한 dBrain 개선 (3월~) •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(11월)
	회수업무 민간위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산관리공사와 위탁범위, 수수료 등 협의 (~8월말) • 일부 시범위탁 실시 (9월) •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(위탁수수료 지급근거)
	신용정보기관에 연체 등 자료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(자료제공 근거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)
	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(포상금 지급규정)
	중장기 검토 과제	국가채권 연체정보 집중시스템 구축
연체채권-채무 상계 프로그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고금관리법 등 개정사항 • 美 Treasury Offset Program 검토